

-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805
------------	-----

2019년 8월 28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8월 2일, 이현찬 의원 외 11명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9년 8월 2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현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서 하여금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는 평가를 시장의 의무

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권한규정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고, 또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는 그 평가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누락된 약칭을 정의함(안 제3조제1항 및 제10조)
-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를 시장의 재량으로 규정함(안 제18조 제1항)
-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)
- 문구 등을 법령에 비추어 통일적으로 수정함(안 제18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9. 8. 19 ~ 2019. 8. 26
-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) : 원안가결

- 안 제18조제1항 관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상태와 서비스 평가를 시장의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는 관련법에 근거하여, 조례상 관련 평가에 대한 시장 의무를 재량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에 동의함
-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평가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평가의 환류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, 조례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함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요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은 “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제공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나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는 평가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권한규정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,
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는 평가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락 되어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“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도록” 하고 있는 사항을 “할 수 있다”로 변경하는 한편, 평가결과를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임
- 현행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제 18조제1항¹⁾에서는 시·도지사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평가를 “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법에 근거하여 조례상 권한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의 후단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

1)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)
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항2)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대한 평가결과를 시장이 해당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임

현재 서울시는 ‘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’을 통해 65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해당 결과를 e-BusNet³⁾ 등을 통해 각 업체에 통보하고 있음

또한, 137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‘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매뉴얼’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각 업체에 통보하고 있는 만큼,

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사항 및 실제 운영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개정이 가능할 것임
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은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 등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한 의미로 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여 조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2)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(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3) e-BusNet :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노선·정류소·운전자·차량 등의 기초 자료를 관리하여 투명한 정산업무 수행 및 기초 정보 제공 시스템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”를 “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한 후”를 “실시한 후”로, “서울시의회”를 “의회”로, “일부 결과(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)”를 “서비스 평가 결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하거나, 재정”을 “하거나,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”으로, “차등지원”을 “우선적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대중교통운영자는”을 “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”으로, “요구에 따라야”를 “이에 응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<u>시장은</u>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</u>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)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<u>시의회</u>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.</p>	<p>제10조(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)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</u>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----- -----.</p>
<p>제18조(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)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<u>서비스를 평가</u>해야 한다. <후단 신설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<u>한 후</u> 그 결과를 <u>서울시의회</u>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</p>	<p>제18조(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비스</u>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 <u>실시한 후</u> ----- <u>의회</u> ----- -----</p>

해야 하며, 일부 결과(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)를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, 재정 지원 등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서비스 평가 결과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하거나
나,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-- 우선적으로 --.

④ -----

-----.
-- 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
----- 이에 응하여야 ---.